



보도자료

- ▶ 2006. 2. 27 배포
- ▶ 총 쪽 (사진없음)

▶ 산재보험혁신팀 주평식사무관
TEL : 503-9761~2
E-MAIL : jw1209@molab.go.kr
FAX : 507-3734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(최신자료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산재보험 요양급여 범위 확대 및 수가 인상

- 재활보조기구 37개품목 확대, 견관절·고관절 MRI 인정
- 기존 재활보조기구·치과보철료·초음파 수가 9.49% 인상

- 노동부는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재활보조기구와 진료·검사시 필요한 MRI 인정범위를 확대하고, 기존 재활보조기구(54개)·치과보철료·초음파 수가를 9.49%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
- 『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』을 개정고시하여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기준을 적용하고,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달리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시하고 있는데,
- '01.10월이후 요양급여위 범위 및 수가가 동결됨에 따라 재활보조기구 121개 품목중 49개품목이 건강보험 수가보다 낮아졌고,
- MRI 인정범위가 협소하여 산재근로자의 본인부담이 되고 있으며
- 기존 재활보조기구, 치과보철료, 초음파에 대한 수가가 일반수가보다 낮다는 등의 문제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.

○ 먼저 산재근로자의 재활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재활보조기구에 대해서는

- 현재는 의지·보조기, 휠체어 등 121개품목이 인정되고 있으나,
- 금번 고시개정으로 산재환자의 상병악화 방지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근전전동의수, 욕창예방방석, 욕창예방매트리스, 전동스쿠터 등 37개 품목을 새로이 인정되어 급여품목이 158개로 확대된다.

※ 기준금액 : 근전전동의수 550만원, 욕창예방방석 25만원, 욕창예방매트리스 185만원, 전동스쿠터 167만원 등

○ 또한 자기공명영상진단(MRI)에 대하여는

- 현재는 암·뇌혈관질환·척수손상 등 건강보험의 급여 인정부위 이외에 두부·척추·슬관절에 대해서만 별도인정되고 있는데,
- 앞으로는 회전근개파열, 대퇴골질환 등 산재근로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적정진료를 위해 견관절·고관절도 MRI 급여 인정범위로 포함되고,
- 장해상태확인, 진료방향 결정 등의 경우 인정되는 추가촬영과 관련하여 현재는 1회로 제한되어 있으나, 앞으로는 횟수제한이 삭제되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이상도 인정된다.

○ 아울러 '01.10월이후 수가가 동결된 것과 관련하여 산재보험에서 별도고시하는 기존 재활보조기구(54개), 치과보철료, 초음파의 수가가 9.49%('01.10월이후 건강보험 수가인상율) 인상된다.

○ 그밖에 전문과별로 장해진단서 발급시 수수료를 각각 산정(현재는 1회 산정)토록 하고, X-ray CD 복사수수료(1만원)가 신설되며

- 건강보험 기준이 개정된 경우에도 산재보험에서 별도의 개정 절차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과의 연계규정도 신설된다.

○ 노동부는 금번 재활보조기구, MRI 인정범위 등의 확대에 따라 2만여명의 산재근로자가 추가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,

- 앞으로도 산재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실태 조사실시,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요양급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